

## 결 정

2018 - 2023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 
스포츠서울 발행인 유지환

## 주 문

스포츠서울 2018년 1월 9일자 12면 「나만의 여인/남성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# 이 유

스포츠서울의 위 적시 광고는 남성용 성생활 용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.

그러나 광고주의 명칭, 주소 등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. 따라서 이 광고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13조(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)를 위반했다.

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,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3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2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2월 7일

###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	김 용 담	김용담
위 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장 인	철	장인철

김	규	식	김규식
강		희	강희
하	윤	수	하윤수
김	영	모	김영모
박	현	갑	박현갑
박	미	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2) 광고주의 명칭,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